2021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 연구용역 지원신청서

구 분	접수번호	*	과제번호 ※				
	과제구분	자유과제					
연구과제명	국문	律學解頤 역주					
	영문	*					
연구책임자	성명			전공(학위)			
	소속			직급			
	이메일			전화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3명	연구보조원		1명
총 연구기간	2021년 계약체결일 ~ 2022년 1월 15일(2년차 연구 중 2년차) * 2020년 1차년도연구 완료; 2차년도 연구종료						
연구비신청액	이천삼백일십만원(일금 ₩23,100,000)						

본인(등)은 귀 연구원의 2021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에 의한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귀중

○ 주의

※표시는 기입하지 말 것.

* 연구내용을 별도로 영문으로 발표할 경우만 기재

연구계획서 요약

연구과제명

(국.한문) 律學解頤 역주

(영문)

◆ 계획 내용 요약

조선은 법제사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법전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형사문제를 처리하는 법 전과 관련하여 조선은 기본적으로 ≪大明律≫을 수용하여 적용하였다. 그런데 ≪大明律≫ 자체도 조선 초기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법전이었기 때문에, ≪大明律≫이 모범으로 삼고 있 었던 《당률≫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大明律》 자체의 해석을 위하여 《大明律》의 주석 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 이후 조선 전기까지 수입된 중국법서는 ≪吏學指南≫, ≪ 議刑易覽≫, ≪律學解頤≫, ≪律解辨疑≫, ≪律條疏議≫, ≪大明律附例≫ 등이며, 이는 조선 의 독자적인 주석서인 ≪大明律講解≫의 편찬으로 완결되었다. ≪大明律講解≫는 ≪大明律 ≫ 규정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방대한 주석서보다는 활용하기에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大明律≫은 대부분 ≪大明律講解≫이 다. 이 ≪大明律講解≫의 주석 대부분은 본 역주 대상인 ≪律學解頤≫에서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다. ≪律學解頤≫는 현재 中國 湖南省 張家界市 慈利縣의 承인 蕭思敬이 편찬한 대 명률에 대한 개인적인 주석서이다. 1987년에 ≪律學解頤≫ 원본이 발견되어 최종고 명예교 수(서울대학교)가 열람한 후 소장자의 허가를 얻어 복사본을 만들어두었으나 불행히도 현재 까지 ≪律學解頤≫ 원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남아 있지 않다. 유일 복사본만이 전하는 ≪律學解頤≫는 조선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완성한 유일한 ≪大明律 ≫의 주석본인 ≪大明律講解≫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재 《律學解頤》 전체 초역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주석서인 《律學解頤》는 《당률소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양자를 대조하여 자체의 오류를 찾아서 재번역을 한다. 그리고 明 등 중국 관제나 제도 등에 대한 풍부한 주석과 함께 가능한 한 인용문구의 전거를 밝힐 예정이다. 초역을 바탕으로 매주 공동으로 강독하면서 초역본을 검토하면서 역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만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초역본 수정자 3인을 지정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수정하여 완성할 계획이며, 또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도에는 전반부인 <명례률>에서 <병률>까지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에는 이를 완료하여 2022년 중에 출간할 예정이다.

◆ 예상 연구결과 정보

《律學解頤》의 역주는 일차적으로 조선초기 《대명률》의 수용 및 이해과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것이다. 명 태조가 즉위한 이래 수차례 개정되어 최종 완성된 홍무30년본 《대명률》과 《律學解頤》의 본문을 비교하여 《대명률》의 편찬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조선에서 널리 통용된 《대명률》은 《대명률강해》인데, 이는 《당률소의》,《律學解頤》,《律解辨疑》 등을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律學解頤》의 번역은 《대명률 강해》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지만,《律學解頤》는 현재 유일본으로 남아 있다. 이의 원문정서 및 번역과 원본의 영인출간은 중국법제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여 세계 학계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계획서

○ 연구과제명:《律學解頤》 역주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律學解頤≫ 소개

조선은 법제사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법전국가라고 할 수 있다. 태조대 ≪경제육전≫의 편찬에서 시작하여 성종대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기본법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영조대 ≪속대전≫과 정조대 ≪대전통편≫ 그리고 고종대의 ≪대전회통≫으로 완결되었다. 또독자적인 형률을 편찬하지 않고 중국의 ≪대명률≫을 수용하여 유교이념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이는 고려가 ≪당률소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지만, 필요에따라 송, 금, 원의 법을 개별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한 왕법국가인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대명률》의 수용과 적용은 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395년(태조 3) 관직명 등을 조선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두로 飜案한 《大明律直解》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여 태종대와 세종대에 《大明律直解》의 재번역이 논의되었으며, 또 중국에서 《大明律》 주석서를 수입하여 활용하였다. 고려 말 이후 조선 전기까지 수입된 중국법서는 《吏學指南》,《議刑易覽》,《律學解頤》,《律解辨疑》,《律條疏議》,《大明律附例》 등이며, 이는 조선의 독자적인 주석서인 《大明律講解》의 편찬으로 완결되었다.

본 역주 대상인 ≪律學解頤≫는 현재 中國 湖南省 張家界市 慈利縣의 丞인 蕭思敬이 편찬한 대명률에 대한 개인적인 주석서이다. 편찬자에 대한 정보는 중국 사료에서는 찾을수 없으며, 安瑋(1491~1563)가 편찬하여 1555년(명종 10)에 청주에서 간행한 ≪경국대전주해(후집)≫(청주본)에 간단한 설명이 있을 뿐이다. 이는 하급관리인 편자가 개인적으로 간행하였으며, 후대에 ≪律條疏議≫(사찬), ≪大明律附例≫ 등 다른 주석서가 등장함에 따라 잊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律學解頤》는 1466년(세조 12)에 전라도에서 500부가 간행되었으며, 현존본도 이때의 것으로 추정된다. 1554년(명종 9)에 간행된 魚叔權의 《故事撮要》 <八道程途: 別號冊版幷附> [全羅道]「全州」에 《律學解頤》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 1987년에 《律學解頤》 원본이 발견되어 최종고 명예교수(서울대학교)가 열람한 후 소장자의 허가를 얻어 복사본을 만들어두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律學解頤》 원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남아 있지 않다.

≪律學解頤≫는 조선전기에는 과거 律科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또 성종 연간에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접 인용되는 등 실제 사건의 해결에도 이용되었다.1)

^{1)「}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서울대학교 법학』50-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참조.

2) 서지사항과 체재

1권 1책 133장 이상으로 추측되는 木版本이다.2) 책의 크기와 裝幀 등은 알 수 없고 半葉匡郭의 크기는 26.0cm×17.0cm 내외이다. 匡郭은 四周雙邊이며, 半葉은 12행, 24자이고, 版心은 中黑口 上下內向 黑魚尾이고, 版心題에는 상단에는 "解頤"가 하단에는 張次[쪽수]가 일련번호로 판각되어 있다. 책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조선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는 망실되어 없지만 서문에는 "律學解頤序"가 있어 서명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서문은 擡頭法을 적용하여 본문은 3행에서부터 판각하였다. 원본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11행 22자부터는 마멸되어 총 215字만 남아 있다. 특히 뒷장이 없어서 출판연도나 저자 등 중요한 서지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 현존 복사본에는 1장 뒤, 2장 전부, 53장 전부, 133장 이하가 결락되어 있다.3)

현존 대명률은 7律 30卷 460조로 구성되어 있고, 대개는 卷首가 있다. ≪율학해이≫도이 편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82개소에 대해 주석을 하였고, 현재 확인할 수있는 것은 275개소이다. 전체의 편별 구성과 권별 주석 대상 조문 수는 다음과 같다.

卷首: 例分八字之義

第1卷 名例律: 30

吏律 第2卷 職制: 10, 第3卷 公式: 10

戶律 第4卷 戶役: 9, 第5卷 田宅: 5, 第6卷 婚姻: 13, 第7卷 倉庫: 10, 第8卷 課程: 3, 第9卷

錢債: 3, 第10卷 市廛: 3

禮律 第11卷 祭祀: 5, 第12卷 儀制: 8

兵律 第13卷 宮衛: 8, 第14卷 軍政: 6, 第15卷 關津: 4, 第16卷 廐牧: 4, 第17卷 郵傳: 5

이상 2020년 번역 완료

刑律 第18卷 賊盜: 19, 第19卷 人命: 15, 第20卷 鬪毆: 21, 第21卷 罵詈: 4, 第22卷 訴訟: 4, 第23卷 受贓: 6, 第24卷 詐僞: 10, 第25卷 犯姦: 5, 第26卷 雜犯: 5, 第27卷 捕亡: 8, 第28卷 斷獄: 12

工律 第29卷 營造: 5, 第30卷 河防: 3

3) 역주본 발간의 의의

《律學解頤》의 역주는 일차적으로 조선초기 《대명률》의 수용 및 이해과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것이다. 현존 명 태조 주원장이 즉위한 이래 다섯 차례 개정되어 최종 완성된 홍무30년본 《대명률》과 《律學解頤》의 본문을 비교하여 《대명률》의 편찬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 사용된 《대명률》은 《대명률 직해》가 아닌 《대명률강해》이며, 이는 《당률소의》, 《律學解頤》, 《律解辨疑》 등을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律學解頤》의 번역은 《대명률강해》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律學解頤》의 역주는 《대명률강해》의 편찬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이며, 이를

²⁾ 복사본의 張次[쪽수]는 132장이 끝인데, 제11행에 마지막 조문인 "修理橋梁路道"에 대한 주석이 있기 때문에 본문은 1장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³⁾ 마지막이 결락되었기 때문에 跋文이나 조선에서의 刊行記 등 서지정보 등을 알 수 없다.

바탕으로 ≪대명률강해≫의 편찬과정에 치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지만, ≪律學解頤≫는 현재 유일본으로 남아 있다. 이의 원문정서 및 번역과 원본의 영인출간은 중국법제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여 세계 학계에 기 여할 것이다.

2. 국내외의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1990년대까지 조선의 법전과 그 편찬 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1980년대까지 법이 준수되지 않는 한국현실이 그대로 한국사연구에 투영된 결과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제처에서는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27종 43책을 간행하여 대부분의 전통시대 법제서의 번역을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고 한우근 선생 등이 ≪경국대전≫을 방대한 주석과 함께 번역하였다(1984, 198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어서 이종일이 ≪대전회통≫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간행하였으며, 근래에 ≪대전통편≫도 다시 번역되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각사수교≫,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을 번역하였다. 1960년부터 지속된법전번역은 2000년대 접어들어 기본법전의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초기부터 법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20년대에 소략하지만 《대전회통》을 번역하였으며, 조선총독부에서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표점과 판본대조를 하여 《경국대전》, 《경국대전주해》,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 《續大典》, 《대전회통》을 간행하였다. 199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소장 선본을 영인하여 학계에 제공하였다. 규장각의 영인사업은 우리손으로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律學解頤》와 관련된 《대명률직해》는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1936년 朝鮮總督府中樞院에서『校訂 大明律直解』(해제: 美村樹秀)를 간행하였다. 1964년 법제처에서 법제자료 제13집을 『大明律直解』(남만성 역)을 간행하여 연구의 기반을 닦았다. 2018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대명률직해』(한상권 외 역) 4책과『校勘標點 大明律直解』1책을 간행하였다. 또한 《대명률》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당률소의》는 1994~1997년 3책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간행되었다(김택민·임대희 주편).

이상과 같이 기본법전이 영인·출판되었으며 또 우리 법전만이 아니라 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중국의 법전이 완역되어 연구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졌다. 그러나 현재 《律學解頤》의 역주본은 없으며 다만 《律學解頤》를 소개한 논문과 《律解辯疑》, 《大明律講解》를 비교한 논문 정도만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조선초기의 법제정비에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律學解頤》를 주석과 함께 번역하여 향후 법제사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 지원과제와 관련한 연구성과 및 동향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4)「}조선본 ≪律學解頤≫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54-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律解辯疑・律學解頤・大明律講解의 상호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법사학연구』 53(한국법사학회, 2016) 참조.

3. 연구 방법 및 내용(예상 최종 분량, 연구결과물의 샘플 제시 포함)

1) 역주 방법

《律學解頤》는 초기의 주석서로 《당률소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양자를 대조하여 자체의 오류를 찾아서 번역을 한다. 그리고 明 등 중국 관제나 제도 등에 대한 풍부한 주석과 함께 가능한 한 인용문구의 전거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臺灣 중앙연구원에 소장된 《律解辯疑》와 대조·검토하여 명 초기 《대명률》 주석서의 실상을 규명한다. 또한 세종대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독자적 《대명률》 주석서인 《대명률강해》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대명률강해》에 대한 이해 나아가 조선조 《대명률》의 운용과형사법원의 운용실태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현재 ≪律學解頤≫ 전체 초역이 완료된 상태로 예상 분량은 200자 원고지 약 2000장이다. 초역을 할 때에는 매주 공동으로 강독하여 번역을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번역자를 지정하여 초벌 번역을 하고 강독에서 원문의 교정 및 교감을 하고, 초벌 번역을 검토·수정하여 완료하였다.

주석서인 《律學解頤》는 《대명률》 조문 전체를 제시하지 않고, 대상인 조문을 부분적으로만 제시하였다. 그래서 《대명률》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역주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조문을 참고로 제시한다.

2) 역주 샘플

※ <형률> [적도] 제277조 謀反大逆에서 제286조 盜園陵樹木까지 10개조를 제시한다.

律學解頤

刑律

秋官 司寇也, 詰姦慝 刑暴亂.

주례의 추관5)으로 그 책임자는 '사구'6)이며, 간사함을 꾸짖고 난폭함을 처벌한다.

賊盜

^{5) 《}周禮》 〈秋官第五〉: 惟王建國辨方正位體國經野設官分職以爲民極. 乃立秋官司寇使帥其屬而掌邦禁以佐王 刑拟國

^{6) 《}尚書注疏》 <周書> [洪範 6]: "司寇는 나라의 禁令을 관장하니 간특함을 다스리고 포악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를 형벌한다[司寇掌邦禁 詰姦慝 刑暴亂]"

제277조 謀反大逆 모반과 모대역

1. 謀反大逆條內云: 凡謀反及大逆者.

解曰: 謀反者 謀危社稷也. 大逆者 謂謀毀宗廟·山陵·宮闕也.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凌遅處死. 蓋人君者 托社稷而言, 不敢指斥尊號 故也. 人君者 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祗受天命 奄有四海, 而有狡竪兇徒 謀危社稷 如興狂計, 其事未行 將而必誅, 卽同眞反 凌遅處死 不亦宜乎.

율문: 謀反 및 모대역

해왈: '謀反'은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꾀하는 것이다. '모대역'은 종묘·산릉·궁궐을 훼손할 것을 꾀하는 것이다. 함께 모의한 경우는 수범·종범7)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능지처사8)에 처한다. 임금은 사직에 기대어 말하며 감히 존호를 직접 가리키지 못하기 때문이다.9) 임금은 천지와 자신의 덕을 합하고 일월과 자신의 밝음을 합하며 천명을 삼가 받아서 사해를 소유하지만, 교활하고 흉악한 무리가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꾀하여 만약 광포한 계략을 일으킨다면, 그 일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장차 하려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베어 죽이는데,10) 바로 실행에 착수한 것과 같이 여겨 능지처사에 처하는 것이니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2. 律云: 俱不追坐, 何也?

解曰: 女許嫁 已有受聘私約, 雖未婚 並歸其夫.

○若子孫爲人所養或入僧道 女爲尼僧・女冠, 皆不緣坐.

율문: '모두 추급해서 연좌하지 않는다'는 무엇인가?

해왈: (범인의) 딸의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폐백을 받고 혼약을 맺었으면, 비록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그 남편에게 보낸다.

○자손이 남의 양자가 되거나 승려·도사가 되고, 딸이 여승이나 여관이 되면 모두 연좌 시키지 않는다.

3. 註云,下條准此,何也?

○謂犯謀叛者, 妻妾·子女 亦合給付功臣之家爲奴.

^{7) &}lt;名例律> §29 共犯罪分首從 참조.

⁸⁾ 凌遅處死: 고통을 극대화기 위한 형벌로, 정규형인 오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Brook Timothy 외 저/ 박소현 역, 『능지처참: 중국의 잔혹성과 서구의 시선』(너머북스, 2010) 참조.

^{9) &}lt;名例律> §39 稱乘輿車駕 참조.

¹⁰⁾ 將而必誅: 《春秋公羊傳》 昭公 元年 조에 "君親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는 반드시 벤다[君親無將 將而必誅焉]"라는 말이 나온다.

- ○若女許嫁·子孫爲人後及爲道士·女冠, 亦不坐. 故云下條准此.
- 〇假如雜戶及工樂人,各附州縣貫 受田進丁 與百姓同. 其有犯反·逆·叛應緣坐者 並與奴婢 例同 止坐其身,不在不限籍之同異緣坐之例.

율문: 註에서 '아래에서도 이에 준한다'라고 함은 무엇인가?

해왈: 謀叛을 범한 자의 처첩·자녀는 또한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딸의 혼인을 허락하거나 자손이 남의 후사가 되거나 도사와 여관이 되면 또한 연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도 이에 준한다'라고 하였다.

○잡호와 공악인이 각각 주·현(의 호적)에 등재되어 토지를 받아 장정이 되면 백성과 같다. 이들이 謀反·모대역·謀叛을 범하여 연좌되면 모두 노비의 예와 같아서 그 자신만 처벌하며, 호적의 동일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좌시키는 예의 범위에 있지 않다.

참고

1. **凡謀反[®] 及大逆[®]**,但共謀者 不分首從 皆陵遲處死. 父子年十六以上 皆絞, 十五以下及母女·妻妾·祖孫·兄弟·姊妹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爲奴 財産並入官. 男夫年八十及篤疾婦人年六十及廢疾, 並免緣坐之罪. 伯叔父·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皆流三千里安置. 緣坐之人非同居者 財産不在入官之限.¹¹⁾ 若女許嫁已定 歸其夫. 子孫過房與人及聘妻未成者, **俱不追坐**.[®] 知情故縱隱藏者 斬. 有能捕獲者, 民授以民官 軍授以軍職, 仍將犯人財産 全給充賞, 知而首告 官爲捕獲者 止給財産. 不首者 杖一百流三千里.

- ① 謂謀危社稷.
- ② 謂謀毁宗廟山陵及宮闕.
- ③ 下條准此.

제279조 造妖書妖言 요서·요언의 제작

1. 造妖書妖言條內云: 凡造讖緯·妖書·妖言

解曰: '讖緯'者 謂造成休咎·善祥·凶惡之語及鬼神之言, 妄說吉凶 以惑衆也. '妖書'者 謂妖異·妖常之書也. '妖言'者 謂欺罔·奸邪之言. 若以讖緯·妖書·妖言 預占國家興廢 及傳用惑衆者 皆斬.

^{11)&#}x27;父子年十六以上 皆絞~財産不在入官之限': ≪大明律附例≫'祖父父兄弟子孫及同居人 不分異姓 及 伯叔父· 兄弟之子 不限籍之同異 年十六以上 不論篤疾廢疾 皆斬, 其十五以下及 母女·妻妾·若子之妻妾 給付功臣之家 爲奴 財産並入官'

율문: 참위12)·요서·요언의 작성

해왈: "참위"는 화복·길상·흉악의 말과 귀신의 말을 지어내어 망령되이 길흉을 말하여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요서"는 괴상한 책이다. "요언"은 기망하고 간사한 말이다. 참위·요서·요언으로 국가의 흥망을 미리 점치거나, (그것을) 전파·이용하여 대중을 현혹시키면, 모두 참형에 처한다.

2. 律云: 若私有妖書, 隱藏不送官者.

解曰: 蓋'私有妖書'者,謂前人舊作,衷私相傳,非己所製,私藏在家.雖不行用,但不送官者,合杖一百徒三年.衷私者,謂情有規避,而潛去之謂也.

율문: 요서를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 숨겨두고 관에 보내지 아니한 경우.

해왈: "요서를 몰래 가지고 있다"는 다른 사람이 전에 만들었는데 몰래 전해진 것으로,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집에 숨겨둔 것이다. 비록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관에 보내지 않기만 하면 장100 도3년에 처함이 합당하다. '몰래[衷私]'¹³⁾는 규피¹⁴⁾할 뜻을 가지고 숨 겨버리는 것을 이른다.

참고

- 1. **凡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 皆斬.^① 若私有妖書,隱藏不送官者 杖一百徒三年.
 - ① '皆'者, 謂不分首從 一體科罪 餘條言皆者 並准此.

제280조 盜大祀神御之物 대사에 사용하는 물건의 절도

1. 盗大祀神御物條內云: 大祀者·饗薦者·饌具者

大祀者,謂天地宗廟也.謂玉帛·牲牢之屬也.薦饗·饌具已入祀所 曾經陳設,祀官省視而盜之者,不分首從 一體處斬.

율문: 대사, 향천, 찬구.

해왈: '대사'는 하늘과 땅, 종묘에 대한 제사이다. ('향천'은) 옥과 비단, 희생 등의 제물이다. 제물·찬구가 이미 제사 장소에 들어갔고 진설을 마쳤는데, 제사 담당 관원이 살핀 다음에 그것을 훔치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형에 처한다.

¹²⁾ 讖緯書: 풍수지리 및 예언과 미래의 일 등에 대한 비결을 적은 서적을 말한다.

^{13) 《}吏學指南》 〈捕亡〉 衷私: 謂情有窺避而潛去者 참조.

¹⁴⁾ 規避: 어떠한 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 '규(規/窺)'는 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며, '피(避)'는 피하고 숨기는 바가 있는 것이다. 〈刑律〉[賊盜] §281 盜制書 2 참조.

2. 律云: 未進神御及營造未成者.

解曰:如帷帳·祭器等物,擬欲供進神御而未供進 及 營造未曾完備之物而盜者,杖一百徒三年.

율문: 신에게 바치기 전이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

해왈: 휘장과 제기 등의 물건을 신에게 바치기로 하였지만 아직 바치지 못한 것과 만드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훔치면 장100 도3년에 처한다.

3. 律云: 若已奉祭器之物.15)

〇謂牲牢·饌具之屬, 饗薦已畢之物也.

율문: 이미 제사를 지낸 물건

해왈: 희생·찬구 등으로 제사에 이미 사용한 물건이다.

4. 律云: 及其餘官物.

○謂大祀所用釜甑刀匕盤盂之屬, 非供神用之具. 而盜之者, 各杖一百徒三年.

율문: 그 나머지 관물

해왈: 대사에 사용된 가마솥, 시루, 칼, 그릇 따위로 신에게 바치지 않는 물건이다. 이것을 훔치면 각각 장100 도3년에 처한다.

5. 律云: 若計贓重於本罪者, 各加盜罪一等.

解曰:如庖丁與監宰者,盜祭祀肉十五斤 直鈔五十貫,監宰者,依監臨主守科以滿貫斬,庖丁依常人盜官物五十貫 杖一百流二千五百里 加盜罪一等,杖一百流三千里,仍盡本法,刺盜官物三字.

율문: 장을 계산하여 본조의 죄보다 무거운 경우는 각각 도죄에 1등을 가중한다.

해왈: 백정과 감독자가 초 50관에 해당하는 제사용 고기 15근을 훔치면, 감독자는 감림 주수가 스스로 훔친 것이 최고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형에 처하며,¹⁶⁾ 백정은 일 반인이 관물 50관을 훔친 것으로 판단하여 장100 류2,500리에 처하는데 여기에 1등을 가중하여 장100 류3,000리에 처하고, 모두 본법대로 '盜官物' 3자를 자자한다.¹⁷⁾

참고

^{15)&#}x27;若已奉祭器之物': ≪大明律講解≫'若已奉祭訖之物'.

^{16) &}lt;刑律> 「賊盜」 §287 監守自盜倉庫錢粮.

^{17) &}lt;刑律> [賊盜] §288 常人盜倉庫錢粮.

- 1. 凡盜**大祀**神祇御用祭器·帷帳等物 及盜**饗薦玉帛·牲牢·饌具**之屬者 皆斬.^① 其**未進神御及營造未成 若已奉祭訖之物 及其餘官物** 皆杖一百徒三年. **若計贓重於本罪者 各加盜罪一等**② 並刺字.
 - ① 謂在殿內及已至祭所而爲盜者.
 - ② 謂監守常人盜者 各加監守常人盜罪一等.

제281조 盜制書 제서의 절도

1. 盗制書條內云 (凡盜制書及起馬御寶聖旨·起船符驗者 皆斬)

制書者, 謂朝廷勅旨及奏抄之謂也. 御寶者, 以白玉爲之, 有八寶之別. 其詳具于下條. 起船符驗者, 符, 信也, 驗, 其合同之謂也. 若盜, 皆斬. 官文書者, 謂曹司所行文案·行移^{18)·}解牒之類也. 凡盜者, 合杖一百.

'제서'는 조정이 발행한 조칙의 요지와 주본의 초록을 말한다. '어보'는 백옥으로 만들며, 팔보의 구별이 있다. 상세한 것은 아래 조¹⁹⁾를 보라. '기선부험'에서 '부'란 믿는다는 뜻이고,²⁰⁾ '험'은 같이 합쳐진다는 것이다. 훔치면 모두 참형에 처한다. '관문서'는 관사에서 시행하는 문안, 행이²¹⁾, 해첩²²⁾ 등이다. 훔치면 장100이다.

2. 律云: 規避者, 從重論.

解曰: 盜此等官文書, 有所求爲或有避匿之事, 重於杖一百者, 各從重科罪, 仍盡本法, 俱刺字.

율문: 규피하려는 경우는 무거운 죄를 따라 논한다.

해왈: 이들 관문서를 훔쳐서 어떤 일을 꾀하거나 혹은 (혐의를) 피하거나 숨기려고 한 경우에 (그 일이) 장100보다 무거우면 각각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고, 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자도 한다.

3. 律云: 事干軍機錢糧.

解曰: 軍馬臨當征討之時, 若將供給錢糧文書而偸盜者, 皆絞. 其徵收錢糧文書, 非干軍機者, 止科盜官文書之罪.

^{18) &#}x27;行移': 원문은 '付移'이나 의미상 수정하였다.

^{19) &}lt;형률> [적도] §283 盜內府財物 참조.

²⁰⁾ 符: ≪이학지남≫: 説文曰: 符者信也. 契合也. 符之爲言扶也, 兩相符合而不差也, 所以輔信於四方, 猶命令也.

²¹⁾ 行移: 문서를 발송하여 조회함(行文移牒).

²²⁾ 解牒: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

율문: 사건이 군사 기밀상의 전량과 관계된 경우

해왈: 군대가 적을 정벌해야 할 때에, 전량을 공급하는 문서를 절취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다만 전량을 징수하는 문서가 군사기밀과 관련이 없으면 관문서 절도의 죄로 처벌한다.23)

참고

- 1. 凡盜制書及起馬御寶聖旨.起船符驗者 皆斬
- 2. 盜各衙門官文書者 皆杖一百刺字 若有所窺避者 從重論 事干軍機錢粮者 皆絞.

제283조 盜內府財物 궁궐 깨물의 절도

1. 盗內府財物條內云: 盜御寶及乘輿服御物.

解曰:稱御者,太皇太后,皇太后·皇后,並同皇太子.蓋古先哲王有八寶,皆以白玉爲之.天子所守之印曰寶.寶者,印也,信也.自秦漢以來,天子曰璽,諸侯曰印.一曰神寶,謂自祖宗得國以後傳而寶之.二曰受命寶,謂受天眷命,登位守國,故以受命名寶也.唯封泰山·禪梁父用之.三曰皇帝行寶,惟報王公以下及詔赦·聖旨用之.四曰皇帝之寶,惟封建王公及賜勞用之.五曰皇帝信寶,謂徵王公及調兵用之.六曰天子行寶,謂施外夷及詔赦用之.七曰天子之寶,惟封建外夷賜勞用之.八曰天子信寶,惟徵召外夷及調兵用之.九曰奉天之寶,此唐宋之神寶,已見前說.十曰制誥之寶,一品至五品誥命用之.勅命之寶,六品至九品以下勅命用之.廣運之寶,勅內外文武百官用之.其二后寶·皇太子寶,皆以金爲之.盜者,皆斬.

율문 주석: 옥새나 임금이 입고 쓰는 물건을 훔치는 것[행위]

해왈: '어'라고 하는 것은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를 가리키며, 황태자도 또한 같다.

옛날 훌륭한[밝은] 임금[先哲王]에게는 팔보가 있는데 모두 백옥으로 만들었다. 천자가 간직하는 도장을 '보'라고 한다. '보'는 도장[印]이니 증빙[信]하는 것이다. 진한 이래로 천 자는 '새'라고 하고 제후는 '인'이라고 하였다.

첫째는 '신보'인데, 조상이 나라를 얻은 이래로 후대에 전하여 이를 보배로 여겼다.

둘째는 '수명보'인데, 천명을 받아 임금의 지위에 올라 나라를 지키므로 수명으로써 보의이름을 삼았다. 오직 태산과 양보²⁴에서 봉선²⁵)할 때 사용한다.

²³⁾ 즉 《大明律》 〈刑律〉 [賊盜] §281 盜制書 ②의 전단규정인 盜各衙門官文書者 皆杖一百刺字 若有所窺避者 從重論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²⁴⁾ 泰山: 山東省 중부에 있는 산의 정상에서 하늘을 제사(封)지내고, 부근의 梁父라는 작은 동산에서 땅을 제사(禪)지냈다.

²⁵⁾ 封禪: 중국에서 고대의 제왕이 하늘과 땅에 지내던 국가의 큰 제사이다. 태산에서 지내는 하늘 제사를 봉(封)이라 하고 양보에서 지내는 땅 제사를 선(禪)이라고 하였는데 합쳐서 봉선(封禪)이라고 이른다.

셋째는 '황제행보'인데, 왕·공 이하에게 회신하거나 사면령이나 성지를 내릴 때 사용한다.

넷째는 '황제지보'인데, 왕·공을 봉작하거나 공로를 치하하는 데 사용한다.

다섯째는 '황제신보'인데, 왕·공을 소집하거나, 군사를 징발하는 데 사용한다.

여섯째는 '천자행보'인데, 외국에 보내는 문서, 사면령을 내릴 때 사용한다.

일곱째는 '천자지보'인데 외국인에게 봉작을 내리거나 공로를 치하하는 데 사용한다.

여덟째는 '천자신보'인데 외국 사절을 소집하거나 군사를 징발하는 데 사용한다.

아홉째는 '봉천지보'인데 당나라와 송나라의 신보와 비슷한 것으로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열째는 '제고지보'인데, 1품에서 5품까지의 고명²⁶⁾에, '勅命之寶'는 6품에서 9품까지의 칙명에 사용하다. '廣運之寶'는 내외의 문무백관에게 칙명을 내릴 때 사용하다.

다만 태황태후보·황태후보의 두개 보와 황태자보는 모두 금으로 만든다. 훔치면 모두 참 형에 처한다.²⁷⁾

참고

- 1. 凡盜內府財物者 皆斬.①
 - ① 盜御寶及乘輿服御物 皆是.

1. 盗軍器條內云: 若盜應禁軍器者, 與私有同.

解曰: 軍器者, 人馬甲·傍牌·火銃²⁸⁾·信炮·大皂·纛旗及標子之類. 若盜此等軍器, 卽同私有, 合依兵律私藏應禁軍器本條, 一件杖八十, 各罪止杖一百流三千里. 若盜非應禁軍器者, 謂弓·箭·鎗·刀·弩及魚叉·禾叉, 計贓以凡盜論, 五十貫杖六十徒一年之類.

율문: (소유가) 금지된 병기를 훔치면 사사로이 소지한 죄와 같다.

해왈: '군기'란 갑옷, 마갑, 방패, 화총, 신포, 마굿간, 깃발 및 표자 등이다. 이들 군기를 훔치면 사사로이 소지한 죄와 같은데, 병률 병기 소지의 금지 조문[私藏應禁軍器; 통일]29)

²⁶⁾ 誥命: 황제가 내리는 명령 또는 그 문서.

^{27) 《}唐律疏議》 <詐偽》 §362 偽造八寶: [疏議曰, 皇帝有傳國神寶, 有受命寶·皇帝三寶·天子三寶, 是名八寶. 依公式令: 神寶, 寶而不用;受命寶, 封禪則用之;皇帝行寶, 報王公以下書則用之;皇帝之寶, 慰勞王公以下書則用之;皇帝信寶, 徵召王公以下書則用之;〈賊盜〉 §271 盜御寶及乘輿服御物:皇帝八寶,皆以玉爲之,有神寶,受命寶,皇帝行寶,皇帝之寶,皇帝信寶,天子行寶,天子之寶,天子信寶.

²⁸⁾ 원문은 火+充.

^{29) &}lt;兵律> [軍政] §235 私藏應禁軍器. 이에 따르면 1건을 소지할 때마다 장80이며, 건마다 1등을 가중하 되 최고형은 장100 류3,000리이다.

에 따라서 1건을 소지하면 장80에 처하고, 각각 형은 장100 류3,000리에 그친다. 금지된 병기가 아닌 것을 훔친 경우란 활, 화살, 창, 칼, 쇠뇌 및 작살, 낫 등이다. 이것들은 장을 계산하여 일반 절도30)로 논하여 50관이면 장60 도1년에 처하는 등이다.

참고

1. 凡盜軍器者 計贓以凡盜論 若盜應禁軍器者 與私有罪同. 若行軍之所及宿衛軍人 相盜入己者 准凡盜論 還充官用者 各減二等.

제286조 盜園陵樹木 원릉 나무의 절도

1. 盜園陵樹木條內云: 園陵者.

解曰: 帝王之陵 有園者也. 蓋此內樹木而盜之者 卽坐杖一百徒三年.

○墳塋者, 謂人所葬之墓地也. 若盜此內樹木者 坐杖八十.

율문 : 원릉.

해왈: 제왕의 능에 동산이 있는 것³¹⁾이다. 이 안에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훔친 자는 장 100 도3년에 처한다.

- 분영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묘지이다. 이 안의 나무를 훔친 자는 장80에 처한다.
- 2. 律云: 計贓重者. 各加盜罪一等.

解曰:如盜園陵樹木者,杖一百徒三年,計其入己樹木之贓四十五貫 重於徒三年之罪.依常人盜官物律 杖一百流二千里,加盜罪一等 杖一百流二千五百里,計贓至八十貫 絞.

〇若盜他人墳塋內樹木者, 杖八十, 計其入己樹木之鈔三十貫 重於杖八十者. 依竊盜律 杖九十, 加盜罪一等 杖一百之類. 設若計贓雖多 並罪止杖一百流三千里, 不得加至於死. 蓋此條律得罪應重, 故稱凡盜園陵內樹木 卽坐徒罪, 盜他人墳塋內樹木 卽坐杖罪, 又稱加盜罪一等. 而不准竊盜論, 故無刺字之文, 難同別條一體刺字. 講者詳之.

율문: 장을 계산하여 (형이 더) 무거우면 각각 절도죄32)에 1등을 가중한다.

해왈: 원릉의 나무를 훔치면 장100 도3년인데, 자기 것으로 한 나무의 가격을 계산하여 (이것이) 45관이면 도3년보다 무겁다. 즉 일반인이 관의 물건을 훔친 율에 따르면 장100 류2,000리인데,³³⁾ 여기에 절도죄에서 1등을 가중하여 장100 류2,500리에 처한다. 장물을

^{30) 〈}刑律〉 [財盗] §292 竊盗

^{31) ≪}唐律疏議≫〈賊盜〉 \$278 盜園陵內草木: [疏]議曰, 園陵者, 三秦記云, 帝王陵有園, 因謂之園陵.

^{32) &}lt;刑律> 「賊盜」 \$287 監守自盜倉庫錢糧, \$288 常人盜倉庫錢糧, \$292 竊盜 모두를 가리킨다.

^{33) 〈}刑律〉 [財盜] §288 常人盜倉庫錢糧: 四十五貫, 杖一百流二千里.

계산하여 80관이면 교형에 처한다.34)

○다른 사람의 분영 안의 나무를 훔치면 장80인데, 자기 것으로 한 나무의 가격을 계산하여 (이것이) 초 30관이면 장80보다 무겁다. 즉 절도의 율에 따르면 장90인데³⁵⁾, 여기에 절도죄에서 1등을 가중하여 장100에 처하는 등이다. 설령 장을 계산하여 많더라도 형은 장100 류3,000리에 그치며, 가중하여 사형에 이를 수는 없다.³⁶⁾ 본조의 죄를 지은 것이 마땅히 무거우므로, 원릉의 나무를 훔치면 도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의 분영에 있는 나무를 훔치면 장형에 처하며, 또 (장을 계산하여 형이 절도죄보다 무거우면) 절도죄에 1등을 가중한다. 그러나 준절도³⁷⁾로 논하지 않으므로 "자자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다른 조문에서 '모두자자한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하기 어렵다. 공부하는 자는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

1. 凡盜園陵樹木者 皆杖一百徒三年. 若盜他人墳塋內樹木者 杖八十. 若計贓重於本罪者各加盜罪一等.

(이하 생략)

4. 신청 주제와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연구 성과

연구책임자는 법학전공자로 ≪律學解頤≫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5종의 법전, 법서와 1종의 일기를 공동으로 번역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법서에는 ≪대명률≫이 자주 인용되고 있으므로 대명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공동번역의 책임자로 활동하여연구진들을 협의를 충분히 하여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번역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공동연구자는 법학전공자 2명과 역사전공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전공자 ①은 조선에서 ≪대명률≫의 수용과 정착 그리고 조선적 변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대명률의 조문을 치밀하게 법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여 ≪대명률≫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기획한 '새로읽는우리고전총서 25'로 『대명률직해: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을 출간하는 등 대명률 전체를 이해하고

^{34) 〈}刑律〉 [賊盜] §288 常人盜倉庫錢糧: 八十貫, 絞.

^{35) 〈}刑律〉 [賊盜] §292 竊盜: 三十貫, 杖九十.

^{36) 〈}名例律〉 §38 加減罪例:凡稱加者 就本罪上加重. … 不得加至於死.

^{37) 〈}권수〉 [例分八字之義] 准: '准'者, 與眞犯有間矣. 謂如准枉法・准盜論. 但准其罪 不在除名・刺字之例, 罪止 杖一百流三千里.

있다. 법학전공자 ②는 대명률의 특정조문의 연원과 조선에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변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관련연구를 지속하였다. 또 ≪묵재일기≫의 역주에도 참여하는 등 번역 경험도 있다. 역사전공자는 법적 현상을 역사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사료를 번역하는 등 연구경험이 풍부하다.

법학과 출신인 연구보조원은 대학원 진학 전에 지곡서당에서 한학은 연수하였으며 중국 고전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리고 계속 주례 등을 강독하면서 공동으로 번역한 경험이 풍 부하여 본 역주과제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3인, 연구보조원 1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 동안 공동으로 법전을 지속적으로 번역하여 왔으며, 따라서 공동 번역의 경험이 풍부하며, 또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수행한 작년 1년 동안의 번역을 바탕으로 ≪律學解頤≫를 완역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 추진 일정 및 연구 분담 계획

1) 역주 추진 방법

《律學解頤》는 名例律과 6전인 吏戶禮兵刑工律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는 133장이며, 2년에 걸쳐 역주할 예정으로, 2020년에는 名例律, 吏律, 戶律, 禮律, 兵律(총 59)을 역주하였다. 이어서 2021년에는 나머지 刑律과 工律을 역주하여 전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역을 바탕으로 매주 공동으로 강독하면서 초역본을 검토하면서 역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만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초역본 수정자 3인을 지정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수정하여 완성할 계획이며, 또 화상회의를하는 방법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완화되어 대면회의가 가능하게 되면 화상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완수할 예정이다. 금년도의 번역 대상과 분량 및 조문수는 다음과 같다[총 73장, 117개조].

刑律 第18卷 賊盜[11장, 19개조], 第19卷 人命[7장, 15개조], 第20卷 鬪毆[15장, 21개조],

第21卷 罵詈[1장, 4개조], 第22卷 訴訟[9장, 4개조], 第23卷 受贓[4장, 6개조],

第24卷 詐僞[4장, 10개조], 第25卷 犯姦[3장, 5개조],

第26卷 雜犯[3장, 5개조], 第27卷 捕亡[6장, 8개조], 第28卷 斷獄[9장, 12개조]

工律 第29卷 營造[2장, 5개조], 第30卷 河防[1장, 6개조] [결락] 총: 3장

2) 역주 추진 일정

매주 4장을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역주를 진행한다.

2021년 4월: 刑律 第18卷 賊盜[11장, 19개조]

2021년 5월: 第19卷 人命[7장, 15개조]

2021년 6월: 第20卷 鬪毆[15장, 21개조]

2021년 7월: 第21卷 罵詈[1장, 4개조], 第22卷 訴訟[9장, 4개조]

2021년 8월: 第23卷 受贓[4장, 6개조], 第24卷 詐僞[4장, 10개조],

第25卷 犯姦[3장, 5개조], 중간보고서 제출

2021년 9월: 第26卷 雜犯[3장, 5개조], 第27卷 捕亡[6장, 8개조],

2021년 10월: 第28卷 斷獄[9장, 12개조],

工律 第29卷 營造[2장, 5개조], 第30卷 河防[1장, 6개조]

2021년 11월: 미진한 부분 집중 검토

2021년 12월: 번역용어, 역주 등 전체 통일

2022년 1월: 최종보고서 제출

3) 역주 분담 계획

본 역주팀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번역의 취지에 맞게 전원 번역·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과 같이 강독을 진행한다.

- 2인이 1차 초벌번역 검토 ⇒ 2인 초벌번역 검토본 재검토 ⇒ 강독 종합검토 확정
- = 강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월간 진도표를 작성하여 공지한다.
- 번역의 완성도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번역 완성 후 연구진의 최종 교차 검토한다.
 - = 賊盜[11장], 人命[7장], 受贓[4장], 詐僞[4장]:

공동연구원①, 공동연구원③, 연구보조원[형식], 연구책임자[내용]

= 鬪毆[15장], 罵詈[1장], 訴訟[9장]:

공동연구원②, 공동연구원①, 연구보조원[형식], 연구책임자[내용]

= 刑律 雜犯[3장]~工律 河防[1장]:

공동연구원③, 공동연구원②, 연구보조원[형식], 연구책임자[내용]

6.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律學解頤》 역주가 완성되면 해설논문, 원문정서 및 번역과 주석, 원본 영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편집의 편의성과 독자의 열람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편집 등은 추후 출판사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역주서가 간행되면 ≪대명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조선에 적용된 ≪대명률강해≫의 편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선초기 중국법 수용사를 풍부히 할 수 있으며, ≪대명률≫의 운용을 파악하여 조선조 법제사는 물론 한국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법제사의 기초자료를 세계학계에 제공하여 최종 ≪대명률≫인 홍무30년본의 성립과정을 규명함에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법을 수용하였지만 ≪대명률강해≫를 바탕으로 조선이 독자적인 형률을 운용한 역사성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 1. 연구책임자
- 2. 공동연구원(1)
- 2. 공동연구원(2)
- 2. 공동연구원(3)
- 3. 연구보조원

□ 예산서

한국학 연구용역 사업 연구비 산출내역서

(연구책임자 : 성명)

(단위 : 원)

항 목		신 청 액	산 출 내 역	
① 인건비		연구책임자: 480만원공동연구원: 1,080만원연구보조원: 360만원	- 공동연구원: 45만×8월×3인	
소 계		19,200,000		
② 연구 활동 경비	·회의비	600,000	15,000×8월×5인	
	· 여비			
	· 유인물비	110,000		
	· 교통통신비			
	· 기타비용	40,000		
소 계				
③ 직접성 경비	· 조사연구비			
	· 문헌구입비			
	· 전산처리비			
소 계				
④ 간접비	· 간접연구경비	1,050,000	[①+②+③+④]의 5% 계상	
소 계		21,000,000		
⑤ 부가가치세		2,100,000	부과 대상인 경우 총 연구비 내에서 [①+②+③+④]의 10% 계상	
소 계		2,100,000		
합 계		23,100,00		